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94 발의연월일: 2022. 9. 7.

발 의 자: 김수흥·김주영·최인호

김교흥 • 기동민 • 정일영

이명수 · 김민석 · 안규백

맹성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소기업이 효율성 제고와 확장 등을 위하여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사업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최근 코로나-19의 장기화,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중소기업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 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85조의8제1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5조의8(중소기업의 공장이전	제85조의8(중소기업의 공장이전
에 대한 과세특례) ① 2년 이	에 대한 과세특례) ①
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	
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	
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	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	
률」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	
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	
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	
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	
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	
의 대지와 건물을 <u>2022년 12월</u>	<u>2027년 12월</u>
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	31일
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	
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	
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	
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	
있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